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14 회 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9.

박 종 길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박 종 길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, 구청장을 당연직 공동 회장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와 행정 간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**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18조에는 대표회장의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19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**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【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07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3.

발 의 자 : 박종길, 정순옥, 김정희,  
도하석, 장호섭, 이진환

### 1. 제안이유

-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, 구청장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와 행정 간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구성 등(안 제17조)
- 나. 대표회장의 직무 등(안 제18조)
- 다. 협의회의 운영(안 제19조)

#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6조
- 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7조제1항 중 “회장을 포함하여 30명”을 “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하며,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. 당연직 공동회장은 구청장이 되고,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대표회장의 직무 등)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- ② 대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(협의회의 운영)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2. 위촉직 공동회장 또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7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<u>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18조(회장의 직무) ① <u>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② <u>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제19조(회의) ① <u>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<u>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</u></p>	<p>제17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 <u>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-----.</u></p> <p>② <u>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하며,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. 당연직 공동회장은 구청장이 되고,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대표회장의 직무 등) ① <u>대표회장-----</u> -----.</p> <p>② <u>대표회장이 부득이한 -----</u> ----- <u>당</u> <u>연직 공동회장-----</u> -----.</p> <p>제19조(협의회 운영) ① <u>대표회</u> <u>장-----</u> --.</p> <p>② <u>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</u></p>

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2. 위촉직 공동회장 또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협의회의 회의-----  
-----  
-----.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

제26조(이해관계자 협력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,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·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,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, 기술협력 및 표준화, 공동조사·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